

투자자문계약서

(주) 미래에셋증권

투자자문계약서

※ 본 투자자문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 3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제 4 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기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만기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어플리케이션 등),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 6 조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 평잔을 기준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제 7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통지의무)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 16 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21 조 (관련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회사) 상 호 : (주) 미래에셋증권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미래에셋센터원)

대표이사 : 허선희 (인)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 _____원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재산 평잔의 연_____%(분기 후취)

☐ 성과수수료 : 없음

4. 기본수수료 징수시기

☐ 매 분기 첫 영업일(1월, 4월, 7월, 10월) 또는 계약 해지일

5. 지점 투자자문담당자 :

6.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7.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제16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연체이자율 : 9.9%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x 연체이자율(9.9%) X 반환지연기간 (윤년의 경우,365일)